

경기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2. 01. 18.

제1조(근거 및 명칭) 대한장애인당구협회(이하 “협회”) 정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대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검토하여 이사회에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각 세부종목별 경기 규칙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종 대회요강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기 대진 및 세부 일정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4. 경기진행 및 기록에 관한 사항
5. 경기 소청에 관한 사항
6. 경기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7. 대진추첨에 관한 사항
8. 경기운영의 평가, 분석 및 개선책 제시
9. 기타 대회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7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협회 정관 제2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각 종목별로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부 칙(2022.01.18.)

제1조(시행일) 이사회 승인 날로부터 시행한다.